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1. 6. 9.>

[]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
[]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7일

신청인	대표자 성명(한글)	(한자)
	생년월일	직책

기금법인	명칭	인가번호
	주사무소 소재지	

변경내용

「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」 제38조제1항·제5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기금법인

신청인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○○지청)장 귀하

첨부서류	1. 정관변경 이유서 1부 2. 개정될 정관(신·구조문대비표 첨부) 1부 3. 정관변경에 관한 사내(공동)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 1부	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확인·심사	→	결재	→	인가서 작성	→	대장 정리 및 전산 입력
신청인		근로개선지도과·고객지원실		근로개선지도과		청장·지청장		근로개선지도과		근로개선지도과

↘ 인가서 발급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